

지방공정거래사무소 10년의 주요 변화와 특징 및 과제*

지철호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금년 8월초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가 개소한지 10주년을 맞이한다. 돌이켜보면 지방사무소는 규모와 기능면에서 작은 조직으로 출발하여, 그 동안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지방으로까지 확산·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역할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방사무소 운영과정의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1. 지방사무소의 설치 배경 및 의의

1980년대초 공정거래제도가 시행된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정거래 관련업무를 대부분 직접 처리하였고, 일부 할인특별판매행위나 경품류제공행위 등에 대한 규제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전국적 확산이 지체되며, 위임에 따른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에도 공정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관계 전문가나 소비자보호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90년초 공정거래법 2차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기획원장관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으로 개편되면서 이와 함께 1990.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 지방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방사무소는 공정거래질서를 지역경제권 내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서 공정거래제도의 운영방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사무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

*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

를 시정하고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 등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2. 지방사무소 설치 현황

지방사무소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업무를 중앙에서만 처리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설치되었다. 즉, 1990. 4. 7.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에 의해 구체적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1990. 7. 31. 대전사무소, 8. 1. 광주사무소, 8. 2. 부산사무소 등 전국의 3개 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3개 지방사무소만으로는 공정거래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었고, 특히 부산사무소의 경우 그 관할구역이 너무 방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1년 하반기에 지방사무소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여 대구사무소를 1992. 2. 13. 설치하고 4. 1. 개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표1>에서와 같은 총 4개의 지방사무소가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1> 지방사무소 설치현황

| 명 칭 | 관 할 구 역 | 위 처 | 직원수 | 개소일 |
|-----------------|---------------------------|--|------------|-------------|
|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 | 부산·울산·경남 (부산·대구·경남·경북) |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부산우체국빌딩 8층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203의 3 중후빌딩 4층) | 20 (21) | 1990. 8. 2 |
|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 | 광주·전남·전북·제주 | 광주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본점빌딩 9층 (광주시 북구 중흥동 655-4) | 19 (18) | 1990. 8. 1 |
|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 대전·충남·충북 | 대전시 중구 오류동 187-1 동아생명빌딩 3층 (대전시 중구 대서동 248-364 오성빌딩 3층) | 18 (18) | 1990. 7. 31 |
|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 | 대구·경북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77-4 교원공제회관 6층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559-10 보은빌딩 12층) | 18 (17) | 1992. 4. 1 |

* ()안은 개소 당시의 관할구역·위치·직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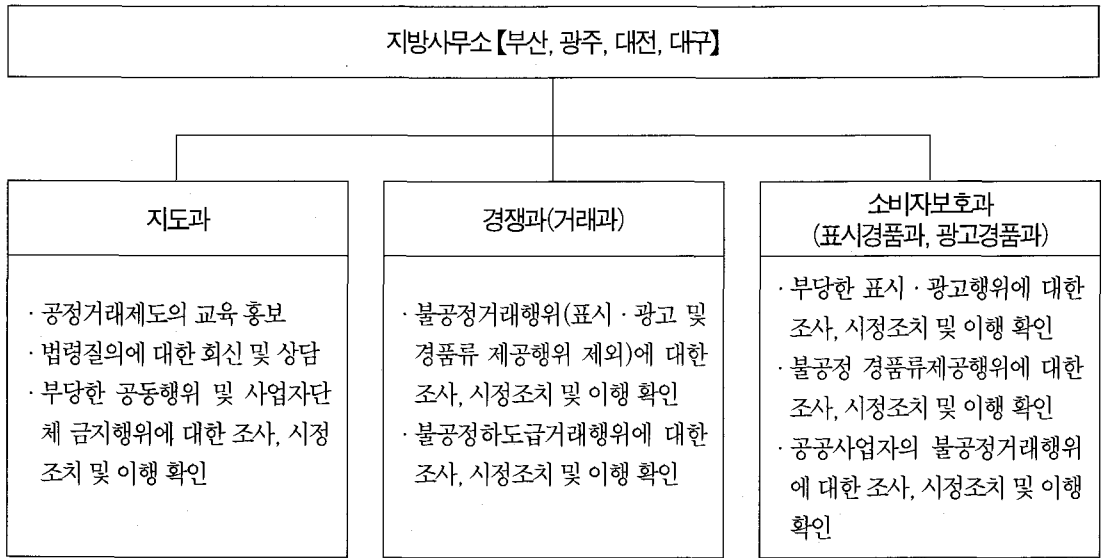
3. 지방사무소의 조직 구성 및 변천

지방사무소는 서기관급의 소장 1인과 3개과로 구성되고, 각 사무소별 정원은 20명 내외로 유지되어 왔다. 개소 당시 3개 지방사무소의 총 정원은 57명이었으나, 1992. 2. 13. 72명(4개 사무소), 1997. 8. 12. 82명, 1999. 5. 24. 75명 등으로 변천되어 2000. 6월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소 이후 지방사무소 조직은 총 정원의 증감이나 일부 과의 명칭변경과 같은 작은 변화는 있었으나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지방사무소를 구성하는 3개과는 지도과, 경쟁과, 소비자보호과이며, 해당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담당해야 할 공정거래 관련업무를 <그림 1>와 같이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림 1> 지방사무소의 조직 및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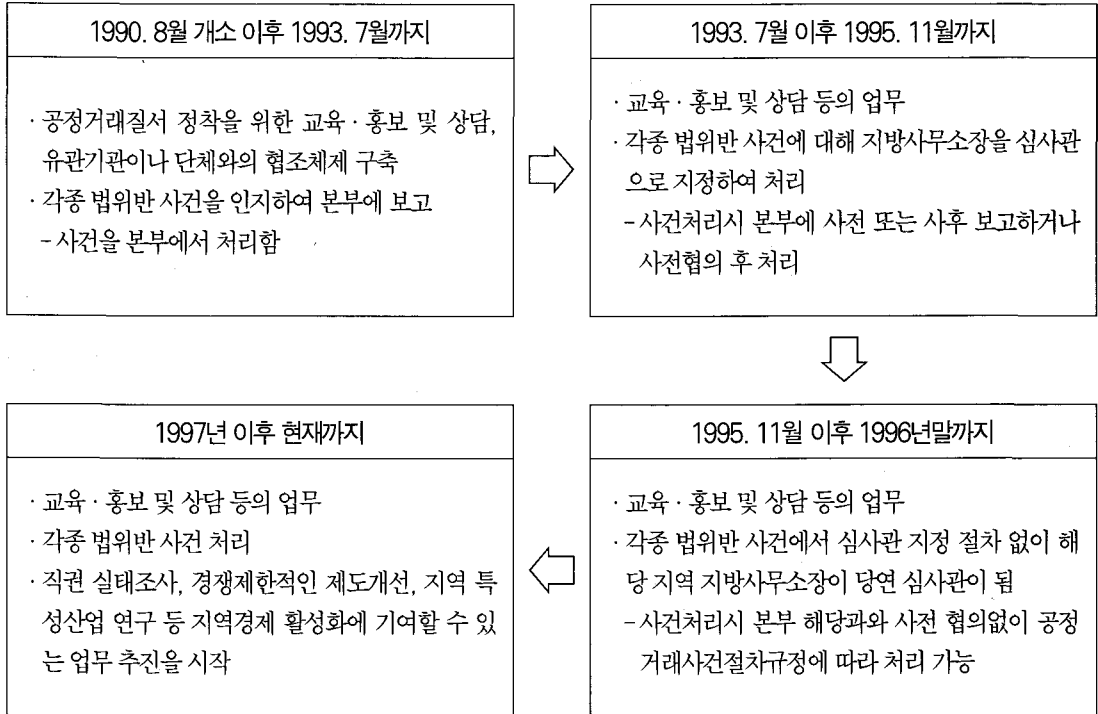
* ()안은 현행과 같이 변경되기 이전의 명칭임

4. 지방사무소의 주요 기능 및 변천

지방사무소의 업무와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인 '지방사무소 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이 지침은 1993. 3. 31. 제정되어 현재까지 4번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지방사무소의 주요 업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공정거래질서를 지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홍보 및 상담과 지역의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② 일정한 범위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의 처리, ③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경쟁제한적 제도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업무 등이다.

지방사무소의 업무는 개소 이후 오늘날까지 조직이 정착되고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점차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커다란 변화를 거쳤으며,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지방사무소의 주요기능 변화



5. 지방사무소의 주요업무 처리

공정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 매년 유통업체, 주요 사업자 및 단체, 소비자단체, 관계 공무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제도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심결사례는 물론 지방사무소의 주요 활동내용을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에 적극 보도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전화·우편·인터넷·방문 등을 통한 공정거래관련 질의·상담 활동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공정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요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의 상공회의소,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나 공정거래제도 교육·상담·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매년 수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여 공정거래 질서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와의 물가안정 및 불공정행위 예방 추진, 지방중소기업청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지방조달청과의 입찰담합 방지활동 전개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사무소의 공정거래 위반사건 처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1999년

말까지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는 <표 2>에서와 같이 1,535건에 이르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 조치유형별 및 위반유형별 사건처리 건수

| 구 분 | | 합계 | '90~'93 | '94 | '95 | '96 | '97 | '98 | '99 |
|------------------|-------------|----------|---------|--------|---------|---------|---------|---------|---------|
| 합 계 | | 1,535 | 16 | 116 | 178 | 295 | 315 | 292 | 323 |
| 조 치 유 형 | 고 발 | 30 | - | 2 | 5 | 7 | 6 | 5 | 5 |
| | 시정명령(과징금부과) | 434(48) | 6(-) | 28(-) | 41(3) | 52(5) | 23(1) | 86(4) | 198(35) |
| | 시정권고 | 164 | - | 2 | - | 46 | 107 | 9 | - |
| | 경 고(분쟁조정) | 907(249) | 10(1) | 84(18) | 132(44) | 190(52) | 179(36) | 192(53) | 120(45) |
| 위 반 유 형 | 부당한 공동행위 | 70 | - | 7 | 10 | 17 | 10 | 11 | 15 |
|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217 | 6 | 28 | 24 | 32 | 28 | 50 | 49 |
| | 불공정거래행위 | 585 | 9 | 54 | 50 | 94 | 117 | 88 | 173 |
| | 불공정 하도급거래 | 663 | 1 | 27 | 94 | 152 | 160 | 143 | 86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2000.(위반유형 중 '99년 조치된 불공정약관 1건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함)

한편 최근 2~3년 전부터 지방사무소는 새로운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대형 공공발주공사의 입찰장 참여 등을 통해 입찰 담합을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파이낸스업이나 장의업 등과 같은 특정 업종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위반사건 처리과정이나 관련 사업자·단체로부터의 건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또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본부와의 협조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의 특성산업을 선정하여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층적인 분석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은 지방사무소 설치의 의의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6. 지방사무소의 향후 과제

우선 지방사무소의 분야별 업무추진을 보다 적극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홍보나 상담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상설화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범위반 사건 처리는 수차례 절차개선을 통해 지방사무소의 자율성이 충분히 제고되었으므로 각 사무소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

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개발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한다. 비록 초보 단계일지라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입찰담합 예방 활동, 직권 실태조사 실시, 제도개선 또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지방의 특성산업 연구 등의 업무를 지방사무소의 핵심 업무로 정착 시키면서, 이러한 유형의 새로운 업무를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조직으로 이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2~3급 기관장에 40명 이상의 정원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조달청, 지방환경청 등의 다른 지방조직과 대등한 수준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권영**

경쟁이 꽃피는 경제를 만드는 잡지 월간 **공정경쟁**

혼자 뛰어서 1등을 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명이 뛰어서 1등을 한 것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우리끼리 뛰어서 승부를 내는 것보다 다른 국가와 함께 뛰어서 1등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협회에서 발간하는 「공정경쟁」은 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증진시키고, 경쟁이 꽃피는 경제를 만드는 공정거래 전문지입니다.

공정거래시책에 관한 정보, 학계, 업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폭넓은 견해와 국내외 경쟁정책동향 및 주요 심결 사례 분석 등을 수록한 전문연구지로 월 1회 발행됩니다.



▶ 연간 구독료 : 100,000원 ▶ 정기구독 문의 : 조사부 / Tel. 775-8870~2 / Fax. 775~8873